

수원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8가단545996 판결 [창호공사대금 잔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혁범, 정현실

피 고 1. B

2. C 주식회사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홍

3.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드유 담당변호사 정경동

변론 종결 2020. 7. 2.

판결 선고 2020. 8. 20.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C 주식회사,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예비적으로, 피고 D는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와 E, 피고 B 사이에 2017. 1. 18., 피고 D가 화성시 F 대 1,479㎡ 지상에 3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12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이하 위 도급계약서 기재와 같은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7. 4.경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창호공사'라고 한다)에 착수하여 2017. 7.경 이 사건 창호공사를 완공하였는데, 이 사건 창호공사대금으로 2017. 5. 26. 피고 B로부터 20,000,000원을, 2017. 6. 23. 피고 D로부터 50,000,000원을, 2017. 9. 12. 피고 D로부터 15,000,000원을 각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받았다.

다. 이 사건 신축공사는 2017. 7.경 완공되어 2017. 8. 2. 사용승인을 받았고, 신축된건물에 관하여 2017. 9. 5. 피고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갑 제2, 3, 5, 9호증, 을가 제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창호공사계약의 당사자 및 계약금액

가. 원고가 이 사건 창호공사를 완공하였으나 이 사건 창호공사에 관한 서면계약서가 없었던 관계로 피고들 중 1인과 이 사건 창호공사와 관련한 계약을 하였음은 분명하나 그들 중 누구와 계약한 것인지에 관하여 분명한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피고 B와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고 B의 소개로 건축주인 피고 D와 이 사건 창호공사에 관한 계약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 D는 원고가 피고 회사 또는 피고 B와 이 사건 창호공사에 관한 계약을 하였다고 다툰다. 따라서 원고가 도대체 피고들 중 누구와 이 사건 창호공사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창호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창호공사를 완공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나. 이 사건 창호공사계약의 당사자

갑 제1 내지 4, 7, 9호증, 을가 제3 내지 11호증, 을다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G의 증언, 원고 및 피고 B에 대한 각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이 사건 창호공사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피고 B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우선 원고는 자신을 위한 소송대리인이 선임되기 이전에 제출한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창호공사에 대한 견적을 의뢰받고 견적서를 보냈고, 이를 검토한 피고 B로부터 공사요청을 받아 공사를 하였다. 당시 피고 B가 피고 회사의 건설업명의를 대여받아 공사를 하는 것으로 추측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제1회변론기일에서도 '이 사건 창호공사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피고 B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 D는 신축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점, 원고 스스로 건설업 명의대여 관련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창호공사계약의 상대방이 실제로 피고 D거나 피고 회사임에도 피고 B라고 허위로 진술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② 피고 B는 당사자본인신문에서 '원래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의 경우H가 그 계약금액 1억 2,000만 원에 시공하다가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에 당시 1억2,000만 원 공사 중 약 2,000만 원 정도의 공사를 이미 하였으므로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중단된 공사를 할 수 있는지를 피고 B 자신이 고향후배인 원고에게 물었고, 원고는 자재비에 500만 원 정도 차이가 있으므로 공사비를 500만 원 정도 올려달라고 얘기했다. 이에 원고를 피고 D에게 소개하여 원고와 피고 D가 이 사건 창호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피고 B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창호공사의 범위와 금액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B 자신이 협의하였다는 것이다.

③ 피고 D의 아버지로 실제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자인 증인 G은 이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와 이 사건 창호공사계약과 관련하여 만나거나 전화통화조차 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신축공사 당시 원고를 본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 회사의 하수급인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 D의 입장에서는 원고가 피고 D와 직접 이 사건 창호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든 아니면 원고가 피고 회사의 하수급자이든 책임져야할 창호공사대금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피고B나 피고 회사의 주장처럼 피고 D가 원고와 이 사건 창호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그 공사대금 상당액이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계약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증인 G이 이 사건 창호공사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다.

④ 이 사건 신축공사의 세부 공정(토목, 철골, 조적, 타일, 미장, 창호 등)은 모두 하도급에 의해 실행되었다. 피고 회사의 주장에 따르면 여러 세부 공정 중 유일하게 창호공사만 피고 회사에 의하여 하도급된 것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 D 사이의 계약에 의해 실행되었다는 것이나, 그와 같은 차이가 발생한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⑤ 피고 B는 2017. 5. 26. 이 사건 창호공사대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20,000,000원을 계좌이체하였는바, 피고 B가 원고와 이 사건 창호공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라면 이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피고 D로부터 창호공사대금을 받아 이를 원고에게 전달하여 주었을 뿐(돈심부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의 주장과 같이 자신의 소개로 원고와 피고 D가 이 사건 창호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실이라면, 피고 D가 그 공사대금 지급을 피고 B를 통해 보낼 이유가 없고, 피고 B로서도 그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돈심부름을 할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 B의 주장은 이를 믿기 어렵다.

⑥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명의(건설업면허)를 빌려 피고 D와의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따라서 이 사건 창호공사계약을 비롯한 이 사건 신축공사의 세부공정과 관련한 각 하도급계약의 실질적 당사자 역시 피고 회사가 아니라 피고 B로 보인다.

①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B와 E이 피고 회사의 법인인감을 가지고 와서 피고 D와의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D는 E이 피고 회사의 이사로 계약체결 권한을 가진 것으로 알았다.

그러나 실제 E이나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임직원이 아니다.

↳ 오히려 이 사건 도급계약이 체결된 직후인 2017. 1. 20.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피고 B는 이 사건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E은 이 사건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1)을 체결하였다.

티 이 사건 신축공사 당시 피고 B가 모든 공사를 관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사대금 지급에 관하여도 피고 B의 요청으로 피고 D는 피고 회사 또는 하도급자들에 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피고 D는 2017. 5.경부터 2017. 9.경까지 사이에 일부 공사대금을 피고 B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이를 입금받은 B는 다시 원고를 비롯한 하도급업자들에게 입금하기도 하였다.

더구나 피고 B는 2019. 5. 19. 피고 D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입금받았음에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D로부터 공사대금을 입금받기도 전인 2017. 5. 22. 주식회사 I 으로부터 입금된 자금으로 같은 날 하수급인들인 J, K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도 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신축공사의 하수급인인 L에게는 피고D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도 아니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갑 제7호증, 을가 제10호증, 을다 제15호증 참조). 피고 회사나 피고 B의 주장과 같이 피고 B가 피고 회사로 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일 뿐이라면 위와 같은 사정들을 도대체 납득하기 어렵다.

ㄹ 피고 B는 2018. 6. 27.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 사건 창호공사의 견적금액, 계약금액, 추가금액, 입금내역 등을 정리하여 피고 회사에 팩스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는바, 피고 회사나 피고 B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 D가 이 사건 창호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피고 B의 경우 피고 회사로부터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은 하도급인일 뿐이라면 피고 B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요청을 할 이유가 없다. 한편 위 문자메시지와 같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창호공사계약의 내용 등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 B가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의 체결, 공사관리, 대금수금 등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이에 기초하여 원고와의 사이에 하도급계약인 이 사건 창호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현장소장인 O가 2017. 6.경까지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을 관리하고,

총무인 P이 준공 시까지 현장관리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 B는 당사자본인신문에서 '피고 회사의 직원인 P이 총무로 이 사건 현장에 파견나와 있었다. 현장총무격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 B의 진술 외에 O나 P이 피고 회사의 직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B나 피고 회사가 피고 회사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P은 피고 회사의 직원이 아니라, 이 사건 신축공사의 하수급인 중 1인으로 보일 뿐이다(을가 제8호증의 2, 을다 제5호증의 각 기재 참조).

⑦ 피고 D가 2019. 6. 23. 50,000,000원, 2017. 9. 12. 15,000,000원을 각 원고에게 이 사건 창호공사대금 명목으로 계좌이체하고, 원고가 2017. 7. 25. 공급받는자를 피고 D, 공급가액을 70,000,000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피고 D에게 발행한 것은 사실이나, 위와 같은 대금지급은 피고 B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 발행 역시 피고 D와 피고 B의 협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창호공사계약의 계약금액

위에서 열거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이 사건 창호공사계약 당시 피고 B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에 대한 견적을 의뢰하면서 도면을 원고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B는 2018. 6. 27. 원고에게 '최초 견적금액, 계약금액추가금액, 입금내역, 미수금 금액, 세액발행내역을 피고 회사에 팩스로 보내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원고는 견적금액, 계약금액 추가금액 등을 정리하여 피고 회사에 팩스로 보냈는바, 그에 따르면 '견적금액은 125,000,000원, 추가금액은 5,000,000원, 입금내역은 합계 85,000,000원, 세금계산서 발생금액 70,000,000원, 미수금 52,000,000원'인 점, 위와 같이 정리된 미수금이 원고가 이 사건 소로 구하는 청구금액 보다 적은 이유는 위와 같이 정리된 금액에는 이 사건 창호공사대금에 포함되어야 할 부가가치세 중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부가가치세 7,000,000원만이 포함되었기 때문인 점²⁾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창호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은 1억3,000만 원이고, 여기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이 사건 창호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은 1억 4,300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B와의 사이에 그 공사대금을 1억 4,300만 원으로 하는 이 사건 창호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창호공사를 완공한 다음 합계85,0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나머지 창호공사대금 58,000,000원(=143,000,000원-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6.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이 피고 B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한 2020.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피고 B와 이 사건 창호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B가 피고 회사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진행한 이상 피고 회사는 상법 제24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명의대여자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피고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창호공사의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가사 피고 B가 피고 회사의 명의를 빌리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원고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창호공사계약 당시 명의대여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24조가 규정하고 있는 명의대여자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의 발주자인 피고 D,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원사업자인 피고 B, 그리고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이 사건 창호공사를 하도급받은 수급사업자인 원고는, 발주자인 피고 D가 이 사건 창호공사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인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 D는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창호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피고 D의 공사대금지급채무는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창호공사계약의 당사자인 피고 B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공사대금지급채무와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고 D는 피고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창호공사의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 피고 D, 피고 B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하도급대금지불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회사, 피고D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기만

1)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명의인은 M의 대표자 N이나 M의 실제 운영자는 E이다.

2)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체결된 각 하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이 모두 부가가치세 별도의 금액인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이 정리된 견적금액이나 추가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 별도의 금액으로 봄이 상당하다.